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903
----------	------

2017. 9. 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1. 제안경위

- 2017. 6. 9 전철수 의원 발의 (2017. 6. 13 회부)

## 2. 제안이유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상정안건 사전검토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2017년 5월 18일 도시재생위원회의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도시·공간계획 관련 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골자

서울시 도시공간계획의 연계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에 도시재생위원회 및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신설함(안 제64조제2항제3호).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sup>1)</sup>제64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상임기획단’)의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전철수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6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상임기획단<sup>2)</sup>은 위원회 지원과 관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시재정비위원회<sup>3)</sup>”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시·공간계획 관련 5개 위원회<sup>4)</sup>의 보좌기능을 수

1) 도시계획 조례 제정(2000.7.15)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을 명문화함.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운영요령」 (국토해양부, 2012.3) 상임기획단의 주요 기능

- ① 도시·군계획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 ② 다른 법률에 의한 도시·공간계획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 ③ 도시·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 ④ 도시·군계획,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

3) 2007.10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지원기능 신설(「도시계획조례」 제64조 개정)

4)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시장정비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이 중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8조)은 ① 사업추진계획 ② 시장정비구역의 적정성 ③ 도시·군관리계획 중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④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⑤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⑥ 건축허가 등의 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 필요성 ⑦ 입점상인을 위한 보호대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

행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	1. (현행과 같음)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2. (현행과 같음)
3.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 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다음 각 목의 위원회 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다.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4.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4. (현행과 같음)

○ 또한 그 동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5)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6)을 대신해 왔으나, 도시재생법 제8조제1항에 따라 2017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근거7)가 신설되고, 도시재생위원회 지원 업무를 상임기획단 기능

성 등에 대한 심의임.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②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③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것임(「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7) 조례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으로 공식적으로 추가(행정2부시장 방침)<sup>8)</sup>함에 따라 상임기획단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도시·공간계획의 정합성 유지와 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 됨.

- 다만, 상임기획단 업무로 누락되어 있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원 업무를 포함하는 방안과 도시재생위원회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외에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업무를 추가할 경우, 현원<sup>9)</sup> 대비 업무 비중을 고려하여 증원이나 업무 조정 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

②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다.

8)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46호, 2017.6.23.)

회의 안건은 시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상임기획단에서 사전 검토

9) 조례상 규정된 상임기획단 정원은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 5명 이내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제1항), 이중 12명(단장 포함 일반임기제 7명, 시간선택제임기제 5명)은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나머지 2명(일반임기제 2명)은 도시재생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지난 '15.5.15일자로 이루어진 인사발령에 따른 것으로 당시 도시재생본부는 도시재생정책연구반을 설치할 목적하에 상임기획단 연구위원 2명을 전보 조치하였으나, 2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시재생정책연구반은 설치되지 않았음.